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8월 25일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27일

3. 제안이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사항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(안 제명)

- 「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지적재조사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

○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사항 반영(안 제5조)

- 심의·의결사항 추가(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)

○ 지적재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조사·연구 의뢰 근거조항 신설(안 제14조)

-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 15조)

5. 검토내용

- 안 제명은 기존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나,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임.
- 안 제5조는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가 2020. 6월 개정 시행되어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에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안 제14조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5가 2021. 6월 신설되어 지적재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조사·연구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.
- 안 제15조는 「지적재조사 업무 규정」 제7조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·배포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「공직선거법」과 사전 충돌을 예방하고자 함.
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21. 6. 29. ~ '21. 7. 19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제명을 변경하고, 전문적인 조사·연구 추진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및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